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74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김주영 · 박 정 · 최혁진
이학영 · 이용우 · 진성준
임호선 · 김태선 · 염태영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처벌 또한 벌금·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다수·반복적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안전 투자와 예방조치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도급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3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강화하려는 것

임.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위반행위의 횟수, 기업의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 산업재해의 예방·재발방지 조치 이행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이 사고의 중대성,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수준 및 실질적 책임 정도에 비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인해 최근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횟수
2. 기업의 규모
3. 사망한 근로자의 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한 근로자 수의 비율
 3. 산업재해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차, 징수 시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u> <u>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u> <u>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u> <u>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u> <u>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u> <u>인해 최근 1년간 3명 이상의 근</u> <u>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u> <u>업주에게 영업이익의 100분의 5</u> <u>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u> <u>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u> <u>수 있다. 다만, 영업이익이 없거</u> <u>나 영업이익의 산정이 곤란한</u> <u>경우 또는 본문에 따라 산정한</u> <u>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u> <u>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u> <u>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u> <u>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u> <u>적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u> <u>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u> <u>정한다.</u> <u>1. 위반행위의 횟수</u> <u>2. 기업의 규모</u>		

3. 사망한 근로자의 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한 근로자 수의 비율

3. 산업재해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징수 시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